

2016년도 제1회 안전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경 위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 안 사 유

- 법정 의무경비 정산과 정부 추경 등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분 반영 등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3. 추가경정예산(안)

1)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158,735	146,790	11,945	8.1%
일	반 회 계	145,511	144,647	864	0.6%
특별회계	소 계	13,224	2,143	11,081	517.1%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3,224	2,143	11,081	517.1%

2)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866,014	841,585	24,429	2.9%
일	반 회 계	216,080	201,515	14,565	7.2%
특별회계	소 계	649,934	640,070	9,864	1.5%
	교통사업특별회계	5,300	6,600	△1,300	△19.7%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9,843	7,596	12,247	161.2%
	도시개발특별회계	624,791	625,874	△1,083	△0.2%

3) 회계별 사업내역

가. 일반회계

사 업 내 역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50,031	35,466	14,565		
계속사업	소 계	49,267	35,466	13,801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	100	0	100	○ 2015년 재난관리실태점검 평가결과 우수 자치구에 국고보조금이 교부(은평,성동,강남)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p. 359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49,167	35,466	13,701	○ 시설관리공단소속 근로자(1노조)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이 일부 인용됨에 따라 판결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p. 361
신규사업	소 계	764	0	764		
	안전표지판 설치	164	0	164	○ 안전표지판 설치 위한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p. 357
	정릉천 고가교 긴급복구	600	0	600	○ 정릉천고가교 긴급복구를 위한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p. 373

나. 교통사업특별회계

사 업 내 역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0	1,300	△1,300		
계속사업	소 계	0	1,300	△1,300		
	제2자유로 중점부(난지도길)입체화 (교통개선분담금 계정)	0	1,300	△1,300	○ 당초 '16. 6월 기본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 착수할 예정으로 금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월드컵 경기장 교차로 개선 등 상세계획에 대한 유관기관(부서)과의 협의, 설계VE,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기본설계가 '16.12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 편성된 실시설계 예산은 부득이 감추경하고, '17년 본예산으로 편성하고자함	p. 371

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 업 내 역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19,843	7,596	12,247		
계속사업	소 계	19,843	7,596	12,247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11,020	1,020	10,000	○ 기획재정부 국비지원제한 기준과 별도로 '15.12월말	p. 363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100억원 지원 결정 (국토교통부) 됨에 따라 '16년 세출예산서에 미반영된 100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	2,072	0	2,072	○ 2016년 예산 편성 시 국토교통부의 가내시액 미통보로 2016년 세출예산에 미편성되었으나, 국비 2,072백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함	p. 365
	상도교~호장교간 도로확장	5,575	4,704	871	○ 2016년 예산 편성 시 국토교통부의 가내시액 미통보로 우리시 요구액(1,207백만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912백만원만 교부되어 실제 국비 교부액으로 조정하기 위해 미교부 국비 295백만원 감추경 ○ 당해사업은 국비 대 시비 50대 50 매칭으로 추진되는 광역도로사업으로 2014년부터 투입된 사업비 중 시비가 1,166백만원 부족하게 투입되어, 매칭비율 확보를 위해 추경 편성 필요	p. 367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1,176	1,872	△696	○ 2016년 예산 편성 시 국토교통부의 가내시액 미통보로 우리시 요구액(936백만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240백만원만 교부되어 실제 국비 교부액으로 조정하기 위해 미교부 국비 696백만원 감추경	p. 369

라. 도시개발특별회계

사 업 내 역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804	1,887	△1,083		
신규사업	소 계	804	1,887	△1,083		
	동서간 도로개설 및 벗꽃길 연장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0	200	△200	○ 타당성조사 발주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와 협의 결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에서 자체출연금으로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기로 협의됨에 따라 당해예산은 감추경 추진	p. 362
	위례터널 민간위탁 관리운영 용역	804	1,236	△432	○ 위례터널은 2개 자치단체(서울시, 성남시) 공동관리 시설물로, 유지관리 총액 중 성남시 분담분 432백만원 감추경 추진	p. 375
	장지지하차도 관리운영	0	300	△300	○ 2016년 민간위탁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후속대책」에 따른 투자·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사업의 직영관리 전환에 따라 장지지하차도 인수·인계시까지 사업시행자인 SH공사에서 유지 관리 하도록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민간위탁금 전액 감추경 추진	p. 376
	한강상 교량 긴급복구 체계재정비 용역	0	151	△151	○ 2016년 예산편성 이후 민방위담당관으로부터 「비상대비 비축물자 관리개선 학술연구	p. 377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p> 용역」 개최계획이 통보됨에 따라(2016.3.), 당해 용역과 사업성격이 유사하여 예산의 중복투자 우려가 있어 「비상대비 비축물자 관리개선 학술연구 용역」결과를 활용하고 당해예산은 감추경 추진 </p>	

IV. 검토의견

1. 개요

1) 일반회계

가) 세입 : 기정예산 대비 0.6% 증가한 1,455억 11백만원임

나) 세출 : 기정예산 대비 7.2% 증가한 2,160억 80백만원임

2) 교통사업특별회계

가) 세입 : 도시교통본부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됨

나) 세출 : 기정예산 대비 19.7% 감소한 53억원임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가) 세입 : 기정예산 대비 517.1% 증가한 132억 24백만원임

나) 세출 : 기정예산 대비 161.2% 증가한 198억 43백만원임

4) 도시개발특별회계

가) 세입 : 도시재생본부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됨

나) 세출 : 기정예산 대비 0.2% 감소한 6,247억 91백만원임

- 금회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서울시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7% 증가한 29조 9,043억 51백만원(총계규모)으로 법정 의무경비를 정산하고 정부 추경 등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분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이 중 안전총괄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8.1% (119억 45백만원) 증가한 1,587억 35백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244억 29백만원) 증가한 8,660억 14백만원임.

-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6% 증가한 1,455억 11백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7.2% 증가한 2,160억 8천만원임.
- 교통사업사업특별회계 세입은 도시교통본부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되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9.7% 감소한 53억원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517.1% 증가한 132억 24백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61.2% 증가한 198억 43백만원임.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도시재생본부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되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2% 감소한 6,247억 91백만원임.

2. 분야별 검토 의견

가. 세입 예산안

- 안전총괄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8.1%(119억 45백만원) 증가한 1,587억 35백만원이며,
- 이는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성립전 예산(지방재정법 제45조) 129억 36백만원 증가와 서울시 요구액 대비 확정내시액 차이로 인한 9억 91백만원 감소에 따른 것으로 세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표] 세입예산 세부 변경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구분	세부사업명	증감금액	비고
1	국고보조금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	100	성립전 예산
2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10,000	성립전 예산
3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	2,072	성립전 예산
4	특별교부세	안전표지판설치	164	성립전 예산
5		정릉천고가교 긴급복구	600	성립전 예산
6	요구액-확정내시액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696	
7	차이	상도교~호장교간 도로확장	△295	
합계			11,945	

- 여기서, ‘성립전 예산’이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45조1)에 근거하여 추경편성 전에 사전집행하고 사후 추경에 편성하는 예

1)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산으로,

- 지방재정법 제45조는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중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성립 전에라도 사용이 가능하고 사후 같은 회계연도 내에 차기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안전총괄본부가 사전 집행한 상기 [표]의 성립전 예산 사업들이 지방재정법 제45조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 ‘동부간선도로’와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의 경우는 사업명이 명확하여 지방재정법 상 용도가 지정된 경우라 할 것이며,
-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의 경우는 국민안전처가 재난관리실태평가를 통해 우수자치구 3개(은평,성동,강남)를 지정하여 포상금으로 교부한 예산이고, ‘안전표지판 설치’ 역시 국민안전처가 조사한 결과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교부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지방재정법 상 용도가 지정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지방재정법 상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논란에 소지가 있다 하겠음.

나. 세출 예산안

1)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성립 전 예산 편성 (사업별설명서 PP.357, 359, 363, 365, 373)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A=B+C)	기정예산 (B)	금회증감 (C)	추경사유
1	안전 총괄과	안전표지판설치 (특별교부세)	164	0	164	특별교부세 교부 (국민안전처)
2	상황 대응과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	100	0	100	국고보조금 지급 (국민안전처)
3	도로 계획과	동부간선도로 (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11,020	1,020	10,000	국고보조금 지급 (기획재정부)
4	도로 계획과	신사사거리~고양시 계간 도로개설	2,072	0	2,072	국고보조금 지급 (국토교통부)
5	도로 시설과	정릉천고가교 긴급복구 (특별교부세)	600	0	600	특별교부세 교부 (국민안전처)

○ 2016년도 제1회 서울시 안전총괄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총 13건 중 5건은 국비지원(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에 따른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추경에 계상한 것임.

- 먼저, ‘안전표지판 설치’사업은 국민안전처의 위험지역 안전표지판(재난위험시설, 침수차량 우려지대 안내 등) 수요조사(‘16.5월) 및 특별교부세 지원 계획에 따라 금년 8월 특별교부세 1억 64백만원을 교부받아 사용한 것이며,

-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은 2016년도 국민안전처 주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실태평가 결과 은평구(5천만원), 성동구(3천 5백만원), 강남구(1천 5백만원)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서울시가 이를 교부받아 자치구에 지급한 것임.

※ 2017년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개요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 *2005년부터 시행
- 목적 : 각 지자체에 대한 재난관리 목표 제시, 현 상태 진단 및 평가 결과 환류를 통한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 제고
- 대상 : 243개 지자체(시·도 17, 시·군·구 226)
- 시기 : ‘17.1월~3월 ※ 2016년도 실적에 대하여 평가
- 내용 : 재난관리 프로세스, 안전관리체계, 재난대응 조직구성 등에 대한 개인·부서·기관·네트워크부문 역량 평가
 - * 총 41개 지표 : 개인(3), 부서(16), 기관(11), 네트워크(8), 가·감점(3)
- 평가방법 : 기관 자체평가 실시 후 상위평가(국민안전처) 실시
- 평가결과
 - 등급배분 : 3개 등급(우수 30%, 보통 60%, 미흡 10%)
 - 인센티브 : 상위 15% 해당기관 및 노력기관(포상·재정)

- 다음으로,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사업은 총 사업비(3,729억원) 중 2014년에 이미 교부 완료된 국비지원금(621억원) 외 국토교통부로부터 2015년 12월말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됨에 따라 2016년 세출예산서에 미반영된 100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것임.
-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 사업은 2016년 예산 편성 시(‘15.11.) 국토교통부의 가내시액 미통보로 2016년 세출 예산에 미편성되었으나, 정부예산 반영 및 교부에 따라 성

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마지막으로, ‘정릉천고가교 긴급복구’사업은 금년 2월 내부 순환로 정릉천고가 텐던 파단사고의 조속한 복구 및 국민 안전을 위해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6억원을 교부(‘16.8.10.)받아 사용한 것임.

○ 앞 서 설명하였듯이, 이들 성립전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45조가 정한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예산으로 볼 때 별 다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요구액과 확정내시액 차이 발생에 의한 추경예산 편성 (사업별 설명서 PP.367, 369)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A=B+C)	기정예산 (B)	금회증감 (C)	추경사유
1	도로 계획과	상도교~호장교간 도로확장	5,575	4,704	871	국비 반영액: 912백만원 서울시 요구: 1,207백만원 ----- -295백만원 국토부 국비 교부조건 국비 투입금액 5,112백만원 서비 투입금액 3,946백만원 ----- 1,166백만원
2	도로 계획과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1,176	1,872	△696	서울시 요구: 936백만원 국비 반영액: 240백만원

○ ‘상도교 ~ 호장교간 도로확장’사업은 국비 대 시비가 50 대 50 매칭으로 추진되는 광역도로사업으로 서울시가 2016년 예산 47억 4백만원 중 국비 12억 7백만원을 요구한 것에 전

제하여 편성하였으나, 국비 9억 12백만원만 교부됨에 따라 2억 95백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 여기에, 2016년까지 투입된 국비(51억 12백만원)와 시비(39억 46백만원) 간의 매칭비율(50:50) 불만족에 따른 시비 11억 66백만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여,

- 상기 2억 95백만원 감추경 요인과 매칭비율 만족을 위한 시비 추가 투자액 11억 66백만원에 대해 이를 상계하여 최종 8억 71백만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임.

○ 다음으로,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사업은, 이 역시 2016년 예산 18억 76백만원 중 국비 9억 36백만원을 요구한 것을 전제로 편성하였으나 실제로 2억 4천만원만 교부되어,

- 기존 편성된 예산을 국비 교부액과의 매칭비율에 맞추어 시비 6억 96백만원을 감추경하려는 것임.

○ 상기 2개 사업 모두 2016회계연도 예산편성 당시 요구액 기준으로 편성함에 따른 정리추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예산 편성 전에 중앙부처와 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다 정확한 가내시액에 근거하여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3)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사업별설명서 P.361)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A=B+C)	기정예산 (B)	금회증감 (C)	추경사유
1	보도 환경 개선과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49,167	35,466	13,701	통상임금 소송 판결금 지급

- 동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소속 근로자 단체(제1, 제2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²⁾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 일부가 인용(認容)³⁾됨에 따라, 1심 패소에 따른 판결금 137억 1백만원(지연이자 연15% 포함) 지급을 위해 증액편성하려는 것임.
- 여기서, 판결금 총 137억 1백만원 중 121억 41백만원은 2016년 9월 8일부로 선고된 1노조 인용 금액과 지연이자이며, 나머지 15억 6천만원은 12월 1심 판결예정인 2노조 인용 추정 금액을 반영한 것임.

[표] 통상임금 관련 소송현황

(단위: 백만원)

원 고	판결현황	청구금액	판 결 내 용		
			소계	인용금액 (비율)	지연이자
1노조	선고('16.9.8)	22,186	12,141	11,998 (54%)	143 지연이자 15% (판결 다음날 ~ 지급일)
2노조	예정('16.12)	2,885	1,560	1,560 (54%)	-
계		25,071	13,701		

- 2)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
- 3) 인용(認容):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해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요건을 심리한 결과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내용심리를 한 결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

- 공단의 패소 원인으로서는, 원고인 공단 노조(제1, 제2 노조)가 그동안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상여수당 등 20개 항목을 퇴직금, 시간외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다음 [표]에서와 같이 17개 항목을 인용(認容)함에 따른 것인데,

[표] 청구항목 및 판결

연번	항목	판결	연번	항목	판결
1	상여수당	인용	11	출퇴근보조비	인용
2	대우수당	인용	12	활성화활동비	인용
3	직책급수행비	인용	13	징수보조금	인용
4	특수직장려금	인용	14	콜센터업무보조비	인용
5	행사장려금	인용	15	방호활동비	인용
6	복지포인트	인용	16	도로관리비	인용
7	목욕비	인용	17	모바일통신비	인용
8	업무보조비	인용	18	효도휴가비	기각
9	대민활동비	인용	19	월동보조비	기각
10	지원활동비	인용	20	단체보험료	기각

- 서울시는 지연이자('16.1.19.부터 493만원/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직 최종판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회 인용금액과 지연이자를 긴급히 편성하는 것임.

- 2012년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가능성을 판시한 대법원의 판례⁴⁾가 도화선이 되어, 최근 나라 전체적으로 통상임

4)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인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2013.12.18일 선고, 2012다89399판결): 회사는 짝수달에 100%씩, 연간 6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에 퇴사한 자에 대해서는 일할지급(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있었음. 대법원이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에 대한 대가 지급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자에 대하여 일정

금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공단 외에 타 공사·출연기관의 판결결과를 예의주시해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임.

[표] 시투자기관 통상임금 소송현황

구 분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소 제기 건수	10건		7건		2건(→종결)	1건
소 송 인 원	9,670명		5,791명		233명	12명
청 구 항 목	상여 등 11개 수당		상여 등 15개 수당		4개 수당	상여 등 11개 수당
청 구 금 액	1노조	2노조	1노조	2노조	5.7억 (대표소송 진행)	32백만원 (대표소송 진행)
	450	243	193억	235억		
판 결 금 액	260억	71억	77억	93억	5.7억	전 직원 지급
판 결 일	'16.1.12 (1심)	'16.1.12 (1심)	'15.6.30 (1심)	'15.8.27 (1심)	'15.1.12(화해)	'16.2 (1심)
사 용 자 승 소	상여, 월동, 효도, 성과급, 장기연차, 단체보험료		상여, 월동, 효도, 장기연차, 성과급		화해	전부패소
근 로 자 승 소	복지포인트, 대우수당 등		복지포인트, 대우수당, 단체보험료 등		장기근속, 대우, 보전, 직책급	상여, 복지포인트, 대우 등
임 금지급 및 항 소 여 부	- 소 제기 직원 지급 - 사용자측 전부항소 - 통상임금 범위 미확정		- 소 제기 직원 지급 - 노조 항소(상여, 성과급) 및 사용자 부분항소 (단체보험, 복지포인트) - 통상임금 범위 미확정		- 전 직원 소급지급 ※ 미 참여자 포함 - 통상임금 확정	- 상여, 복지포인트 제외 소급지급(전 직원) 및 통상임금 범위 확정 - 사용자 측 항소('16.6) (상여, 복지포인트)

4) 동서간 도로개설 및 벚꽃길 연장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사업별설명서 P.362)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A=B+C)	기정예산 (B)	금회증감 (C)	추경사유
1	도로 계획과	동서간 도로개설 및 벚꽃길 연장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0	200	△200	용역 발주 불필요

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정적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

- 동 사업은 타당성조사 용역수행을 위해 2016년 예산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해당 용역 발주 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 자체 출연금 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⁵⁾되어 집행 요인이 사라짐에 따라 전액(2억원) 감액하려는 것임.
- 센터 자체 출연금 타당성조사 수행방식은 외부 용역이 아닌 직접 시행을 통해 재정낭비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2016년 도입된 것인데,
- 서울시 출연기관인 센터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타당성조사용역이 과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 바, 재정낭비를 최소화한다는 미명하에 타당성조사의 신뢰성이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고 사료됨으로,
- 서울시는 센터 자체 시행 타당성조사 용역의 선정에 가급적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고, 향후 타당성조사 용역비 편성 시에는 센터와 사전협의를 통해 동 사업과 같이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낳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5)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사업별설명서 P.371)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A=B+C)	기정예산 (B)	금회증감 (C)	추경사유
1	도로 계획과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0	1,300	△1,300	행정절차 지연

5) 차년도 타당성조사 과제에 대해 매년 10월 중 수요조사를 실시, 11월 중 선정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과제를 수시로 선정토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제도가 도입된 2016년도에 한하여 4월 중 당해 연도 수행 과제를 선정함.

- 동 사업은 제2자유로 종점부 난지도길 내 3개 교차로(구룡, 월드컵3단지, 월드컵경기장 교차로) 입체화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2016년 6월 기본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 착수를 위해 1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 설계내용 협의, 설계경제성 검토, 주민설명회 등 사전절차가 지연되어 기본설계가 금년 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액 감추경 하려는 것으로,
- 예산편성 당시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라 사료됨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점에서 사전절차 연내 이행 가능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임.

6) 위례터널 민간위탁 관리운영 (사업별설명서 P.375)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A=B+C)	기정예산 (B)	금회증감 (C)	추경사유
1	도로 시설과	위례터널 민간위탁 관리운영	804	1,236	△432	예산편성 착오

- 위례터널은 서울시와 성남시가 공동 유지관리하는 시설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협약(‘14.11.26.)”의 비용분담비율(서울시:성남시=65%:35%)에 의거 성남시로부터 분담비용을 지급받아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가 총괄관리하고 있는데,
- 2016년 예산편성 시 착오에 의해 성남시 분담비용 4억 32백

만원과 서울시 분담비용 8억 4백만원을 합한 총 12억 36백만원을 모두 시비로 편성함에 따라 금회 중복 계상된 4억 32백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 이처럼 타자치단체와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당시 이를 간과했다는 것은 안일하고 신중치 못한 예산편성 행태라 할 것이므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직원교육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7) 장지 지하철도 관리운영 (사업별설명서 P.376)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A=B+C)	기정예산 (B)	금회증감 (C)	추경사유
1	도로 시설과	장지 지하철도 관리운영	0	300	△300	민간위탁 예정에서 직영관리로 전환

- 동 사업은 2016년 민간위탁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공사 준공 지연('16.8→'16.12)과 SH공사로부터 인수·인계 지연(2017.1월 인수) 등으로 집행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고,
- 더욱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발생에 기인하여 투자·출연 기관 안전분야 외주사업의 직영관리 전환방침(시장 기자설명회, '16.6.30.) 시행에 따라 동부도로사업소가 직영관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금회 전액 감추경하는 것임.
- 민간위탁방식에서 직영관리방식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결정이라 여겨지나 그러한 결정이 구의역 사고가

제기가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 이는 직영관리가 가능했다면 민간위탁방식을 검토할 당시부터 직영관리를 우선 검토했어야 하고, 만일 그랬다면 편성 예산액도 훨씬 줄어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 또한, 2016년 편성된 예산이 불필요하게 된 일차적인 원인은 준공지연('16.8월→12월)에 의한 것이며, 부차적으로 안전 분야 외주사업의 직영관리 전환에 따라 동부도로사업소의 직영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음.

8) 한강상 교량 긴급복구 체계재정비 용역 (사업별설명서 P.377)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A=B+C)	기정예산 (B)	금회증감 (C)	추경사유
1	교량 안전과	한강상 교량 긴급복구 체계재정비 용역	0	151	△151	용역 중복

- 동 사업은 한강교량의 증가, 교통·안보·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한강상 교량 긴급복구체계 재정비 용역” 발주를 위해 1억 51백만원을 편성했으나,
- 민방위담당관으로부터 “비상대책 비축물자 관리개선 학술연구 용역” 사전심의 개최계획이 통보(3814호, 2016.3.7.)되어 안전총괄본부가 추진하려던 “한강상 교량 긴급복구 체계 재정

비 용역”과 사업성격이 유사하다는 판단 하에,

- 민방위담당관에서 시행하는 용역으로 대체기로 하고, 안전총괄본부 편성 예산은 금회 감추경 하려는 것으로, 민방위담당관에서 2015년 11월부터 관련 학술연구 용역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유관부서 간에 사전협조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하겠음.

[표] 용역 비교(교량안전과 vs. 민방위담당관)

소관부서	과업명	과업기간	예산액	과업내용	비고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한강상 교량 긴급복구체계 재정비 용역	'16.6.~12.	15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교량 긴급복구 개념 재정립을 통한 복구체계 재정비 - 상위 법률 및 총무계획의 복구개념 검토 및 도입 - 개선자재 도입 및 관리·운용 방안 - 교량의 증가로 우회노선 개발 반영 등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비축물자 관리개선 학술연구 용역	'16.7.~10.	2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축물자 지정 후 40년 경과 안보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비축물자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 총무계획 개선 수정방안 제시, 비축물자 관리개선을 위한 핵심과제 도출 등 	

- 한편, 대체가 가능한 유사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과업기간(6개월 vs. 3개월)은 2배, 예산액(151백만원 vs. 27백만원)은 약 5배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안전총괄본부가 당초 과도한 용역비를 책정했음을 방증한다 하겠음.

다. 명시이월 ([붙임] 조서 참조)

- 금회 안전총괄본부 소관 명시이월 사항은 일반회계 사업 11건에 총 58억 95백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 1건에 13억 42백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 1건에 11억 23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 29건에 총 555억 92백만원으로,
- 금회 안전총괄본부 소관 명시이월액은 전체 42건에 총 639억 52백만원에 달하며, 그 세부내역은 [붙임]과 같음.
- 이처럼 명시이월이 대규모로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수립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것이므로 명시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음.
-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 중 ‘여의도 지하병커 개선사업’은 당초 예산액(20억 35백만원)의 약 69%에 달하는 14억 원을 이월하고 있는데,
 - 이는 지장물 발생으로 설계기간이 증가하고 이설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설계당시 지장물에 대한 검측을 보다 강화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음.
- 다음으로 ‘노면하부 동공탐사’의 경우 당초 예산액(34억 2천만원)의 약 93%에 달하는 31억 81백만원을 이월하고 있으며,

- 이 사업은 기술용역심사, 일상감사, 사전공고 등의 사전절차 기간 소요로 인해 준공기한이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른 것으로,
 - 노면하부 동공탐사의 경우는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서둘러 시행했어야 함에도 다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시되므로 향후 남은 공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사전교 확장(교통개선분담금계정)’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등 사전절차 지연에 따라,
- 각각 당초 예산액(20억원, 18억 72백만원) 대비 약 67%, 60%에 해당하는 13억 42백만원과 11억 23백만원을 이월하고 있으며,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역시, 총 29건의 명시이월 사업 중 10건이 심의, 협의, 보상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총 258억 49백만원을 이월하고 있는 바(아래 [표] 참조),
- 예산편성 시점에서 사전절차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과학적 소요기간 산정으로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표] 사전절차 지연에 의한 명시이월(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예산액	이월액	사유구분	지연내용
1	보도상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3,946	1,788	사전절차 지연	실시설계
2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124,000	9,000	사전절차 지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3	울곡로(창경궁앞)구조개선	2,000	1,700	사전절차 지연	보상
4	선사로~고덕지구간도로확장	13,290	4,000	사전절차 지연	재건축 경계부 협의
5	성북동길 확장	2,000	1,989	사전절차 지연	도시계획사업 절차 이행
6	덕수궁돌담길(영국대사관주변)회복	2,780	2,645	사전절차 지연	영국대사관 협의
7	사고위험도로 구조개선	450	374	사전절차 지연	교통규제심의
8	구천면길 도로확장	1,000	984	사전절차 지연	보상
9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12,404	1,006	사전절차 지연	보상
10	북악스카이웨이1교개축공사	3,400	2,363	사전절차 지연	보상
합계		165,270	25,849		

- 특히, 도시개발특별회계 중 ‘덕수궁 돌담길(영국대사관 주변) 회복’ 사업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 시 영국대사관 소유부지의 사용협의 진행에 따라 설계비(1억 3천만원)만 우선 편성하고,
-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공사비를 편성할 것을 권고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치 않아 결국, 편성액(27억 8천만원) 대비 약 95%인 26억 45백만원을 금회 명시이월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붙임] 1. 2016년 명시이월사업조서

2016년 명시이월사업조사서

○ 일반회계(11건, 5,895,499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사유
1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여의도 지하방커 개선사업	계	리모델링 공사비	2,035,000	1,400,000	○ 예상치 못한 지장물 발견으로 설계기간이 증가하고 지장물 이설시간이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17년 상반기 공사 준공 예정
				시설비		1,938,000	1,370,000	
				감리비		51,000	30,000	
				시설부대비		1,000	-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5,000	-	
				사무관리비		35,000	-	
				공공운영비		5,000	-	
2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국내외 도시안전포럼 개최	계	국내외 의견수렴을 통한 시민안전 보고서 작성 용역비	117,500	117,500	○ 도시안전포럼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되는 「국내외 의견수렴을 통한 시민안전보고서」 과업기간 (‘16.10. ~’17.1.) 소요로 집행 시기 미도래
				사무관리비		117,500	117,500	
3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	계	국내외 의견수렴을 통한 시민안전 보고서 작성 용역비	215,722	20,000	○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안전보고서」 과업기간(‘16.10.~’17.1.)소요로 집행 시기 미도래
				사무관리비		200,700	20,000	
				공공운영비		15,022	-	
4	도로건설	간선도로망 확충	도로건설사업 사후관리 및 조경식재 유지관리	계	공사 위탁비, 공사비	159,042	78,444	○ 암사대교 건설공사가 2016년 11월 준공됨에 따라 인계 후 유지 관리 부서에서 금년도 조경식재 유지관리 공사 발주가 곤란하여 명시이월 필요
				시설비		140,042	72,044	
				민간대행 사업비		19,000	6,400	
5	도로건설	간선도로망 확충	건설현장의 공사관리 및 감리감독 체계 개선	계	용역비	200,000	90,780	○ 건설현장의 공사관리 및 감리감독 체계 개선 용역 과업기간 (‘16.5.12 ~’17.3.7) 소요로 집행 시기 미도래
				시설비		200,000	90,780	

연번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등계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사유
6	도로 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 부속물 관리	노면하부 동공탐사	계	노면하부 동공탐사용역비	3,420,000	3,180,625	○ 3단계로 분리 발주 시행으로 발주 단계별로 각각 기술용역심사, 일상감사, 사전공고 등 절차 이행 기간이 소요되어 준공기한이 당해 연도를 넘어감
				사무관리비		20,000	-	
				시설비		3,400,000	3,180,625	
7	도로 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 부속물 관리	도로사면 붕괴 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계	성산로 옹벽 및 독막로 197 옹벽 경사 변위 계측용역비	1,472,000	20,000	○ 현장조사,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공정성과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계약방법 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하반기 발주 및 도로옹벽 변위를 1년간 계속하여 안전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절대공기 부족
				사무관리비		6,000	-	
				시설비		1,466,000	20,000	
8	도로 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 부속물 관리	노후 도로조명 개선 사업	계	만리재길 도로조명 개선 공사비	11,160,000	530,000	○ 서울역고가 보행길 사업과 연계하는 보행환경개선공사('16.11.~'17.10.)와 병행하여 도로조명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목공사 공정까지 기간 연장
				시설비		11,160,000	530,000	
9	도로 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 부속물 관리	가로등 LED광원 교체 사업	계	퇴계로 LED광원 교체 공사비	3,403,000	119,000	○ 서울역고가 보행길 사업과 연계하는 보행환경개선공사('16.11.~'17.4.)와 병행하여 도로조명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목공사 공정까지 기간 연장
				시설비		3,403,000	119,000	
10	도로 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 부속물 관리	도로정보화 시스템 유지운영	계	도로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운영	177,539	147,150	○ 기존 개별적으로 구축하여 유지운영하던 도로관리시스템 및 포장도로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도로통합관리시스템으로 기능개편 및 유지관리로 사업내용 변경
				사무관리비		3,150	-	
				공공운영비		174,389	147,150	
11	도로 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 부속물 관리	2016년 도로관리 시스템 DB갱신	계	도로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운영	192,000	192,000	○ 도로포장 빅데이터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실지형 도로셀 DB구축으로 과업내용을 확대하고 물량산출하여 정비
				전산개발비		192,000	192,000	

○ 교통사업특별회계(1건, 1,342,0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사유
1	도로건설	간선도로 망확충	사천교 확장(교통개선 분담금계정)	계	공사비, 감리비	2,000,000	1,342,000	○ '16.4월 공사착공 및 하천점용 및 철도공사 업무협의를 병행 추진 하였으나 '16.8월 협의가 완료되어 실제 공정이 지연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하여 '17년 상반기 공사 준공 예정
				시설비		1,700,000	1,300,000	
				감리비		300,000	42,000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1건, 1,123,2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사유
1	도로건설	광역도로 건설	태릉~ 구리C간 도로확장	계	기본 및 실시설계비	(x936,000) 1,872,000	(x187,200) 1,123,200	○ 사업비 분담방안에 대한 국토부, 구리시와 협의 시행, 중앙투자심사 및 시 투자심사 등을 통한 사업의 적정성 확보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으로 설계용역 발주 지연 ('16.09)으로 이월 필요
				시설비		(x936,000) 1,872,000	(x187,200) 1,123,200	

○ 도시개발특별회계(29건, 55,592,258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사유
1	가로환경 수준 개선	도로 시설물 관리(도시 개발)	보도상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계	공사비	3,946,000	1,788,000	○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이에따른 절대공기 부족
				시설비		3,946,000	1,788,000	
2	도로건설	도시고속 도로망 확충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건설	계	개발제한구역 보존 부담금	124,000,000	9,000,000	○ 과천시 구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협의 중 으로서 변경인가 이후 집행 가능함에 따라 집행시기 미도래
				시설비		122,300,000	9,000,000	
				감리비		1,700,000	-	
3	도로건설	간선도로망 확충	올곡로창경궁앞 구조개선	계	보상비 및 공사비	2,000,000	1,700,000	○ 종점부 도로확장구간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보상비 : 1,000,000천원) ○ 단계별 교통전환 시기 조정 등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공사비 : 700,000천원)
				시설비		1,700,000	1,700,000	
				감리비		300,000	-	
4	도로건설	간선도로망 확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매수청구 보상	계	설계비	6,055,808	124,20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정비계획 수립 용역 시행 중으로 지출시기 미도래 ○ 용역기간 : '16.06.~'17.03.
				시설비		6,055,808	124,200	
5	도로건설	간선도로망 확충	선사로~고덕 지구간 도로확장	계	보상비 및 공사비	13,290,000	4,000,000	○ 고덕시영 재건축 경계부 협의 및 상호 간섭으로 공사착수 지연 ○ 생태육교(파형강판)에 대한 총괄건설정책자문단 자문결과에 따른 재설계 시행 등으로 후속공사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 필요
				시설비		12,790,000	4,000,000	
				감리비		500,000	-	
6	도로건설	간선도로망 확충	디지털3단지 ~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계	보상비	9,000,000	919,079	○ 가산동 구간에 대한 손실보상을 2016년 10월경 실시 예정이며 손실보상 절차 이행 등에 6개월 이상 소요되어 보상비 이월 필요
				시설비		9,000,000	919,079	
7	도로건설	간선도로망 확충	사당로 (구)범진여객 ~솔밭로입구 도로 확장	계	기본 및 실시설계비	460,000	227,36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준공시기('17.5.17) 미도래에 따른 용역비 명시이월 필요
				시설비		460,000	227,360	

연번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등계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사유
8	도로건설	간선도로망 확충	서초역~ 방배로간 도로확장	계	공사비, 감리비	17,000,000	4,02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점부(내방역 측) 설계변경 요구 민원처리로 인한 공사지연 발생 ○ 감리계약(2차) 준공시기 미도래 (계약기간 '16. 2. 2 ~ '17. 3.28)
				시설비		16,100,000	3,763,000	
				감리비		900,000	259,000	
9	도로건설	간선도로망 확충	성북동길 확장	계	보상비 및 공사비	2,000,000	1,989,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16. 6. 30)사항 반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보상 지연됨
				시설비		2,000,000	1,989,000	
10	도로건설	간선도로망 확충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계	공사비, 감리비	13,500,000	12,5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사업구간 중 1단계 구간 (신월IC~경인2지하차도)에 대하여 일괄입찰 공사 발주하였으나, 2회 유찰 ('15.12월, '16.1월) ○ 당초 '국회대로 1단계구간 지하차도 구조물' 과 '민자사업 구조물'을 분리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별건 공사로 발주하였으나, 민자터널 관련 상수도 이설 협의, 교통심의 결과 등 그 간의 여건 변화로 일부구간 구조물이 중첩됨에 따라 별건 공사로 추진 불가 ○ 입찰방법 변경(일괄→기타)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방침수립 등 기간 소요로 설계,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이월
				시설비		12,500,000	11,500,000	
				감리비		1,000,000	1,000,000	
11	도로건설	간선도로망 확충	금호로확장	계	기본 및 실시설계비	350,000	23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준공시기('17.9.13) 미도래에 따른 용역비 명시이월 필요
				시설비		350,000	230,000	

연번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등계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사유
12	도로건설	간선도로망 확충	덕수궁 돌담길 (영국대사관 주변) 회복	계	공사비 및 보상비, 감리비	2,780,000	2,645,1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대사관 부지내 돌담길 개방 관련 협의가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설계 등 지연 금년내 설계 완료 후 '17년도 공사 착공예정으로 부득이 소요 사업비 명시이월
				시설비		2,680,000	2,545,194	
				감리비		100,000	100,000	
13	도로건설	간선도로망 확충	상일동 172번지 앞 외 1개소 도로구조개선	계	공사비	600,000	404,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 응벽구조물의 형식과 안정성 확보관련 추가검토가 필요하여 설계지연('16.03.~09.),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 이행 후 공사 착공이 '16.12월 가능함에 따라 명시이월 필요
				시설비		600,000	404,600	
14	도로건설	간선도로망 확충	우이동광장 주변 도로구조개선	계	공사비	300,000	1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설계 완료이후('16.6월) 설계 보완에 따른 공사착공('16.10월) 지연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시설비		300,000	150,000	
15	도로건설	간선도로망 확충	잠실대교 및 천호대교 남단 연결체계 개선	계	설계비	1,850,000	931,5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기간 ('16.6. 9 ~'17.10.1월) 소요로 집행 시기 미도래
				시설비		1,600,000	681,563	
				감리비		250,000	250,000	
16	도로건설	간선도로망 확충	사고위험도로 구조개선	계	공사비	450,000	373,6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규제심의 지연(제한속도 하향, 보도공간 확보 및 안전조치 개선 등) 에 따른 용역 10월 준공 예정 및 11월 공사발주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시설비		450,000	373,687	
17	도로건설	간선도로망 확충	구천면길 도로확장	계	보상비	1,000,000	983,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보상을 위한 분할측량 추진 중으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보상계획 공고 등 관련 절차이행 후 보상 협의 시행으로 보상비 명시이월 필요
				시설비		1,000,000	983,600	

연번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등계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사유
18	도로건설	간선도로망 확충	선잠단지 앞 도로구조개선 사업	계 시설비	보상비 및 공사비	1,000,000 1,000,000	960,000 960,000	○ 성북구 역사문화지구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사업 추진 중으로 '16. 9월 설계 완료, '17. 11월 공사발주 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
19	도로건설	간선도로망 확충	서강대교북단 진출입개선 타당성 용역	계 시설비	타당성조사비	200,000 200,000	63,655 63,655	○ '16. 9월 재배포된 「2016년 수도권 DB OD」 자료를 교통수요 및 경제성 재분석에 적용함에 따라 용역추진 일정이 지연되었음.
20	도로 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 부속물 관리 (도시개발)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시설비 감리비 자산및물품 취득비	도로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운영 용역비 도로포장 품질관리시스템 (PQMS) 용역비 서울시 도로포장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64,383,000 110,000 13,000 600,000 8,000 62,940,000 700,000 12,000	1,442,500 - - - - 1,442,500 - -	○ 기존에 분리되어 있는 시스템 (도로관리, 제설관리, 굴착관리)과 이번에 준공한 포장도로관리 성능개선 및 도로함몰 DB구축 용역('15.7.~'16.7.)과 현재 진행 중인 도로포장 유지관리 기본계획 용역('16.7.~'17.4.)의 성과물을 합쳐 하나의 도로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또한, 도로포장 품질관리 시스템(PQMS)을 구축·반영하여 도로포장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바, PQMS 기술 용역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전산 상으로 반영해야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어 용역의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 (1,200백만원) ※ '16. 6. 20. 도로함몰 예방시스템 현장점검시 시장요청사항 ○ 서울시 도로포장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 건설기술심의, 사전공고, 업체선정 등 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용역 절대공기 부족(242,500천원) ※ 용역기간 : '16.7.4.~'17.4.30.

연번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사유
21	도로관리 (6개 도로 사업소)	사업소 환경개선 (도시개발)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계	남부도로사업소	12,404,000	1,005,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 건축 공사비 666,000천원, 감리비 320,000천원 -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부지 보상에 따른 기간 소요로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비 및 감리비 이월 ○ 가산2빛물펌프장 우수지 복개(차고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9,500천원 - 차고지 이전 대상지 추가검토에 따른 기간연장으로 용역 절대공기 부족
				시설비	청사 건축 공사비 및 감리비	12,084,000	685,500	
				감리비		320,000	320,000	
22	교량관리	일반교량 관리	고가하부공간 활용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287,989	134,750	○ 용역 준공 시기가 '17. 2월로 집행 금액을 제외한 용역비 이월
				시설비		287,989	134,750	
23	교량관리	일반교량 관리	고가하부 공간활용 시범사업	계	고가하부 공간활용 시범사업 공사비	800,000	800,000	○ 고가하부공간 활용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사업대상지 선정 마무리 단계로 하부공간 활용 시범사업 조성을 2017년 상반기 완료 예정으로 공사비 전액 이월
				시설비		800,000	800,000	
24	교량관리	일반교량 관리	중차량 운행허가 시스템 보완 구축 용역	계	시스템 보완 구축 용역비	592,134	298,870	○ 용역 준공 시기가 '17. 3월로 집행 금액을 제외한 용역비 이월
				시설비		592,134	298,870	
25	교량관리	일반교량 관리	사천교 성능개선	계	성능개선 공사비	1,000,000	1,000,000	○ 사천교 성능개선공사는 현재 진행중인 사천교 확장공사 완료 후 착공 예정이었으나, 확장공사가 11월 이후 완료 예정으로 동절기 품질저하 및 안전을 고려하여 '17년 상반기 착공으로 사업비 이월
				시설비		1,000,000	1,000,000	

연번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등계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사유
26	교량관리	일반교량 관리	북악스카이 웨이1교 개축공사	계	개축공사 공사비	3,400,000	2,362,700	○ 토지 보상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수용재결 등 관련절차 이행에 시일 소요되어 공사착공 지연으로 사업비 이월
				시설비		3,400,000	2,362,700	
27	교량관리	한강교량 관리	성산대교 성능개선	계	성능개선 공사비 및 감리비	5,450,000	5,450,000	○ 실시설계 중 가설교량 선정 업체의 과업 참여 포기로 가설교량 설계가 지연되었으며,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시일 소요로 2016년 회기내에 예산 집행이 어려워 공사비 및 감리비 이월
				시설비		5,150,000	5,150,000	
				감리비		300,000	300,000	
28	교량관리	일반교량 관리	장안교 성능개선	계	성능개선 감리비	7,775,000	46,000	○ 건설사업관리용역(2차) 준공시기('17.1.31)로 인해 2016년 회기내에 예산 집행이 어려워 감리비 이월
				시설비		7,275,000	-	
				감리비		500,000	46,000	
29	교량관리	교량시설 물점검관 리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계	모래내고가 정밀안 전진단 용역비	6,408,191	40,000	○ 추가 과업 및 중장기 보수보강 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 필요로('16년 12월→ '17. 2월) 집행 금액을 제외한 용역비 이월 - 모래내고가 중장기 보수보강 계획 수립 T/F팀 운영 연계 및 RC박스 강연선 장력 추가 측정 등 추가 과업 시행
				시설비		6,408,191	40,000	